

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5년 11월 12일

서울특별시 중구의회



1. 제안이유

이 조례는 기부채납된 시설물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, 공유재산의 관리 및 활용 과정에서의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의 범위 명확화(안 제1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
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(을지로6가 18-14) 의회사무과
- 전화 : 02)3396-8166 팩스 : 02)3396-9055
- E-mail : moonsun1004@junggu.seoul.kr

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조 미 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11월 5일

발의자 : 조미정의원 외 3명

(송재천의원, 양은미의원, 윤관오의원)

1. 제안이유

이 조례는 기부채납된 시설물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, 공유재산의 관리 및 활용 과정에서의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.

2. 주요내용

가.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의 범위 명확화(안 제14조)

3. 참고사항

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

4. 신규대비표 : 붙임

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”를 “제1항에 따른 부지의 범위는 시설물이 점유한”으로, “인근 토지”를 “공용 부지”로 한다.

①구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지에 한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)</p> <p><u>①구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, 그 시설물이 점유한 부지 및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공용부지로 하며, 그 부지의 사용료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, 다만,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<u>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.</u></p>	<p>제14조(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)</p> <p><u>①구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지에 한정한다.</u></p> <p><u>②제1항에 따른 부지의 범위는 시설물이 점유한 ----- ----- 공용 부지----- -----.</u></p>